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질오염사고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404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수질오염사고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8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하천·호소 등의 공공수역에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보관 중인 자가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누출·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질오염 발생 위험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누출·유출 신고의무에 대한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수질오염사고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안은 수질오염사고 미신고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2. (생략) <u><신설></u> 3. ~ 7. (생략) ② ~ ④ (생략)	제82조(과태료) ①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u>2의3.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5조¹⁾는 공공수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²⁾, 지정폐기물, 유류, 유독물, 농약을 누출·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1)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중금속, 6가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등이 포함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

동법 제16조³⁾는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류, 유독물, 농약을 운송·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공공수역에서 수질을 오염시킨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⁴⁾, 위반 사실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⁵⁾,

제16조를 위반하여 누출·유출 행위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현행법 제15조 및 제16조 규정 내용 및 위반시 제재]

	내 용	위 반 시 제 재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유독물, 농약 누출·유출 행위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6조(수질오염 사고의 신고)	누출·유출 행위 금지 대상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경우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

3) 「물환경보전법」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유독물,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

5) 「물환경보전법」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한 자

이에 개정안은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으로써 특정수질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공공수역이 오염된 경우 이를 조기에 신고하도록 강제력을 부여하여 대규모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수질오염에 대한 조속한 조치 필요성 및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즉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사입법례]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생략)

1. ~ 6.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22. (생략)

23.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 22. (생략)

③ (생략)

다만, 동 개정안은 수질오염사고 미신고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유사입법례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오염물질 해양 배출에 대한 신고의무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⁶⁾,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 오염 사실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⁷⁾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의 수준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

한편, 과태료를 신설하는 동 개정안에 따라 신법과 구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과조치의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⁹⁾에 따라 행위 시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별도 부칙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6)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이 경우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3.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자

제12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경우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다만, 환경부는 토양오염과는 다르게 수질오염의 경우 확산성이 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 미신고에 대하여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범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③ (생략)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 : 수질오염사고 발생 현황(상황보고 제출 기준, 환경부)

□ 사고유형별 현황

○ 최근 5년간('19~'23) 지류·지천 중심으로 총 666건 발생(연평균 133건)

※ '24년 11월말 기준, 수질오염사고 발생 건수 : 161건

(단위 : 건수)

연도	계	유류유출	화학물질	물고기 폐사	기타(오·폐수 등)
2012	83	42	2	32	7
2013	157	69	21	36	31
2014	212	90	18	61	43
2015	133	58	10	44	21
2016	116	55	7	38	16
2017	122	53	16	37	16
2018	113	57	10	26	20
2019	138	56	20	38	24
2020	162	60	27	40	35
2021	139	51	15	32	41
2022	99	34	13	36	16
2023	128	55	16	28	29

□ 사고원인별 현황

○ 작업자 등의 관리부주의가 사고원인의 36.3%를 차지

(단위 : 건수)

연도	계	관리부주의	교통사고	자연현상	원인불명	기타*
2012	83	34	4	12	11	22
2013	157	68	22	26	20	21
2014	212	50	13	30	39	80
2015	133	47	8	27	23	28
2016	116	27	7	19	15	48
2017	122	51	6	23	18	24
2018	113	59	10	10	15	19
2019	138	47	15	16	28	32
2020	162	69	12	16	24	41
2021	139	49	11	13	27	39
2022	99	31	9	26	11	22
2023	128	49	4	12	19	44

* 소방용수 유출, 장마 시 일시적인 기름띠 발생(비점오염원), 무단투기 등